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內事件

特許無效

<大法院 第1部 判決>(1981. 4. 14)

裁判長：大法院判事 주 재 황

關與法官： 김 용 철 · 김 태 현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：삼성신약주식회사(서울 동대문구 목동 181-4)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：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(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195-9)
3. 原審決：特許廳 1980. 2. 23字, 1978年 抗告審判(당) 第53號 審決
4. 主 文：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
5. 理由

審判請求人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를 判斷한다.

原審決은 그 理由에서 本件 特許는 高純度鹽基性炭酸알루미늄金屬錯鹽 $M^3[AlO(CH)HCO_3]$ 의 製造方法이고 引用發明은 디하이드록시알루미늄소듐카르보네이트 $[(OH)_2AlO \cdot CO_2Na]$ 의 製法인데 兩者는 鹽基性炭酸알루미늄金屬錯鹽을 얻고자 하는 目的이 同一하며 製造工程上에 있어서 알루미늄알칼리金屬鹽溶液中炭酸알칼리鹽을 가하여 製造하는 點에서는 同一하나 引用發明은 化學當量以上の 過量中炭酸알칼리鹽을 溫水에 溶解시켜 溫水槽에서 反應시킬 때 알루미늄알칼리를 少量씩 繼續 注入하고 맹렬히 攪拌하여 反應시키는 것이다. 本件特許는 알루미늄알칼리金屬鹽溶液에 過量의 유리알칼리를 添加하여 알루미늄나 $(X_2O)Al_2O_3$ 의 물비를 4以上으로 하고 二酸化炭素를 吹入하여 알루미늄나水化物이 生成되기 直前에 溫水에 현탁시킨 過量의 重曹를 加하고 二酸化炭素의 吹入을 急激히 하여 $75^{\circ} \sim 90^{\circ}C$ 溫液속에서 HCO_3 가

급히 增加하도록 함으로써 鹽基性炭酸알루미늄金屬錯鹽의 生成速度를 促進하고 沈澱速度가 느린 알루미늄의 公침을 防止하여 高純度の 生成物을 얻는 것으로서 兩者의 工程上의 差異點이 認定되어 兩者는 最終生成物을 얻는 技術의 構成과 效果가 相異하며 製造工程 또한 同一性的 範疇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判斷하고 이와 反對의 見解로 本件特許가 無效라는 審判請求人의 主張을 排斥하고 있는바 이를 記錄에 對照하여 살펴보면 原審의 위와 같은 事實認定과 判斷은 正當하다고 是認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은 探證法則違背 및 特許法을 잘못 解釋適用한 違法이나 判斷遺脫, 理由不備, 理由矛盾, 審理未盡의 違法이 없으며 그밖의 所論主張이나 當審에서 提出하고 있는 證據는 當審에서 새로이 主張, 提出하고 있는 것으로서 適法한 上告理由가 될 수 없거나 그 證據를 가지고 原審決을 論難할 수 없다.

그러므로 論旨는 모두 理由없이 上告를 棄却하기로 하고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하

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

— 參 考 —

抗告審判

1978年 抗告審判(당) 第53號

抗告審判請求人：삼성신약주식회사

被抗告審判請求人：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

위 當事者間의 1976年 審判 第536號 審決不服抗告審判請求事件(特許 第4135號 無效審判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 文：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.

審判 및 抗告審判費用은 抗告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
審 決

1976年審判 第536號

審判請求人：삼성신약주식회사

被審判請求人：전 영 화

위 當事者間의 第4135號特許無效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 文：本件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. 審判費用은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